기술기여도 산정 가이드라인

(‘23.02.10.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1 기술료 제도 개요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 (직접실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기술료율 = 정부납부기술료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대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제3자 실시) 기술료징수액 x 기술료율 = 정부납부기술료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료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대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 사업단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직접실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6월까지 사업단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년 5월에 해당기관에 IRIS시스템을 통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통보 예정

- (제3자실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2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제4조(기술기여도의 산정), 제7조(연구개발성과실시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기술기여도 산정 대상

○ 국가연구개발비의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u>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 후 수익이 발생</u>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자

□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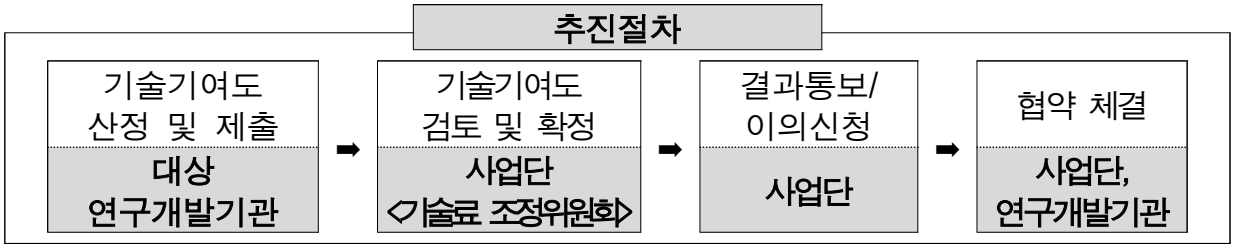

□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

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 A2의 매출액이 발생(신규 제품 개발)하였거나 증가(기존 제품 개선 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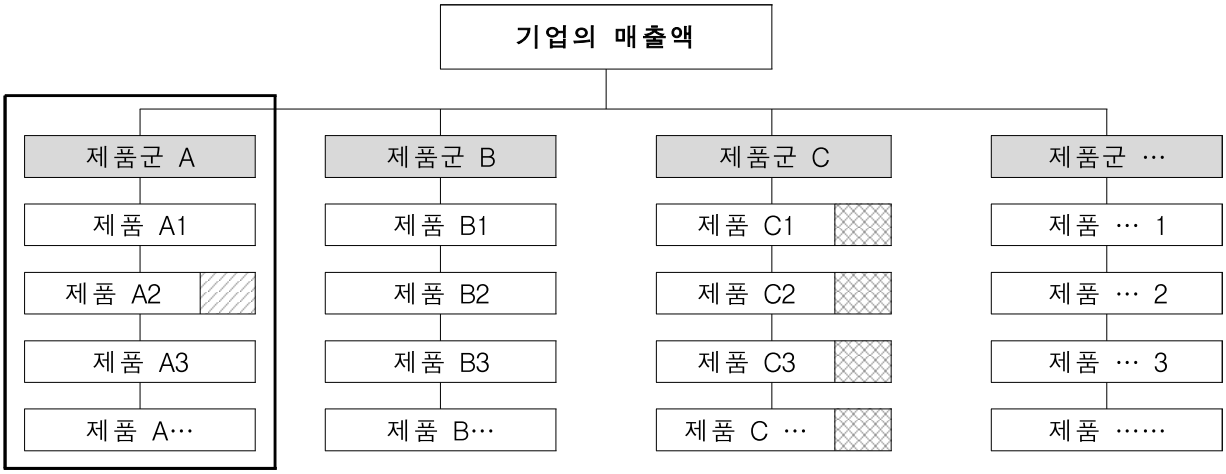

ⅰ) 제품 A2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은 제품 A2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 단위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해야 함

○ (기술기여도) 제품 A2에 대한 총사업비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산출

● 기술기여도 =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연구개발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현물+현금)연구개발비

- (예시) 생채재료 제조 기업에서 총 연구개발비 12.5억 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 기업부담연구개발비 2.5억 원)의 연구개발성과로 개발된 뼈이식용 임플란트를 판매하여,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경우

· 기술기여도 =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연구개발비}} = \frac{10\text{억원}}{12.5\text{억원}} = 0.8$

ii) 제품 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제품군 A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은 제품군 A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해야 함

○ (기술기여도) (제품군에서의 제품 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 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산출

● 기술기여도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제품}A2(\text{예상매출액}^{*})}{\text{제품군}A(\text{예상매출액})} X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연구개발비}^{**}}$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 연구개발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현물+현금)연구개발비

- (예시) 생채재료 제조 기업에서 총 연구개발비 12.5억 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 기업부담연구개발비 2.5억 원)의 연구개발성과로 금속 판/나사를 개발하였으며, 금속 판/나사가 포함된 골수술기 세트를 판매하여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경우 (제품군 예상 매출액은 골수술기 세트 매출액(10억원) 기재, 제품예상매출액은 골수술기 세트에서 금속 판/나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임의로 산정하여 기재(약 60%라고 한다면, 10억원의 60%로 6억원 기재))

· 기술기여도 = $\frac{\text{제품예상매출액*(6억원)}}{\text{제품군예상매출액(10억원)}} X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10억원)}}{\text{총연구개발비(12.5억원)}}$

= 0.6 X 0.8 = 0.48

iii) 제품 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해 기업매출액 확인

○ (기술기여도) (기업매출액에서 제품 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 A2에 대한 총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산출

● 기술기여도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제품}A2(\text{예상매출액}^{*})}{\text{기업(예상매출액)}} X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연구개발비}^{**}}$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 연구개발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현물+현금)연구개발비

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군 C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매출액에 기여(공정 개선 활동 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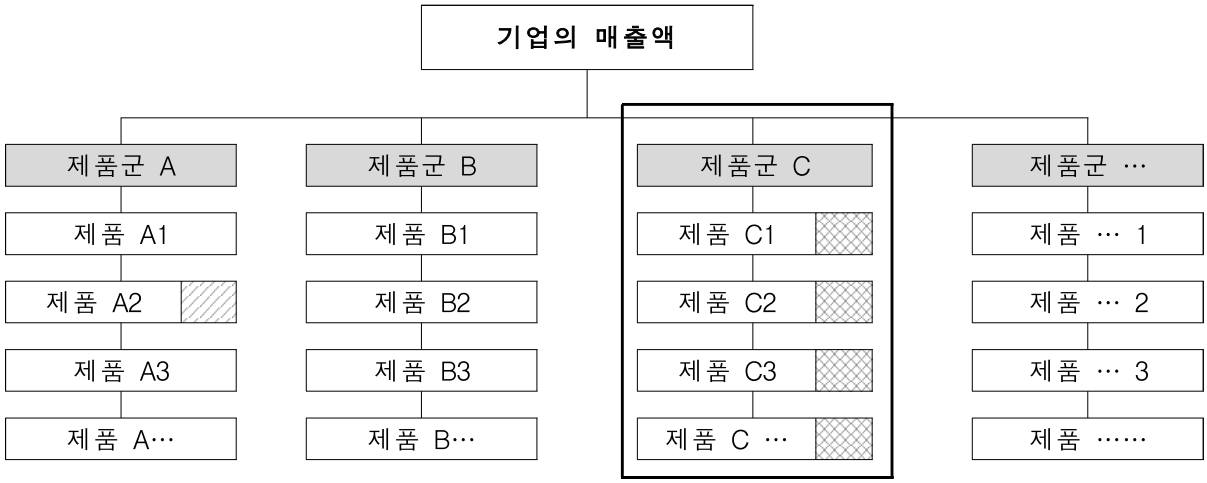

i) 제품군 C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은 제품군 C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해야 함

○ (기술기여도) (제품군 C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 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산출

● 기술기여도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해당기술(예상매출기여액}^{*})}{\text{제품군 C(예상매출액)}} X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연구개발비}^{**}}$

*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 연구개발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현물+현금)연구개발비

- (예시) 생채재료 제조 기업에서 총 연구개발비 12.5억 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 기업부담연구개발비 2.5억 원)의 연구개발성과로 임플란트 코팅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소재를 판매 중인 모든 임플란트에 적용하여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경우(제품군 예상 매출액은 임플란트 매출액(10억원) 기재, 제품예상매출액은 임플란트 개발에서 해당 코팅 소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임의로 산정하여 기재(약 80%라고 한다면, 10억원의 80%로 8억원 기재))

· 기술기여도 = $\frac{\text{해당기술 예상매출기여액(8억원)}}{\text{제품군 예상매출액(10억원)}} X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10억원)}}{\text{총연구개발비(12.5억원)}}$

= 0.8 X 0.8 = 0.64

ii) 제품군 C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해 기업매출액 확인

○ (기술기여도) (기업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 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산출

● 기술기여도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해당기술(예상매출기여액}^{*})}{\text{기업(예상매출액)}} X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연구개발비}^{**}}$

*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 연구개발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현물+현금)연구개발비

별첨1 **기술기여도 협약(변경) 신청서**

기술기여도 협약(변경) 신청서

☐ **과제 개요** (※작성 시 작성요청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사업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참여구분	☐ 주관 ☐ 공동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기술실시 유형** (해당 시 모두 기재)

직접실시	기술료산정방식	R&D성과로 인한 수익×기술기여도×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R&D성과 제품 또는 기술의 개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기술 적용 제품	
제3자 실시	기술료산정방식	기술료 징수액 ×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 ☐ 전용실시 ☐ 통상실시 ☐
	R&D성과 제품 또는 기술의 개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계약체결 예정 연도	
	실시기관	

☐ **기술기여도(직접실시인 경우)**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1회차	매출액발생 2회차	매출액발생 3회차	매출액발생 4회차	매출액발생 5회차
기술기여도* (C x D x 100)					

* 기술기여도 = 매출액기여율(C) x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D) x 100

☐ **산출근거(직접실시인 경우)**

1)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

(단위: 백만원)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여율 산정기준	매출액발생 1회차	매출액발생 2회차	매출액발생 3회차	매출액발생 4회차	매출액발생 5회차	평균
기업 (또는 제품군)	예상 총매출액(A)						
연구개발 결과물	예상 제품의 매출액(B)						
매출액 기여율(협약) (C=B/A)							

2)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D투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원)

협약 시	총 연구개발비(A)*	정부지원 연구개발비(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D=B/A)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산정기준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현물+현금)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 (서명)

[붙임] 회차별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 아래 매출액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산정 가능해야 함

□ 기업(또는 제품군) 예상 총매출액(A)

매출발생 회차	제품명/상품명 등	매출액(천원)	산출근거 (제품 수 x 단가 등)
1회차			
1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2회차			
2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3회차			
3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4회차			
4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5회차			
5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 제품 또는 상품이 다수인 경우 행 추가하여 기재

□ 개발기술제품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매출발생 회차	제품군/제품명 등	매출액(천원)	산출근거 (제품 수 x 단가 등)
1회차			
1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2회차			
2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3회차			
3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4회차			
4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5회차			
5회차 예상 매출액 합계			

※ 제품 또는 상품이 다수인 경우 행 추가하여 기재